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**춘천지방검찰청** 전문공보관 유현정 전화 033-240-4401	**보 도 자 료** **2022. 8. 12.(금)**

제 목	**뇌병변 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중형 선고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 금지정보

-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(부장검사 추혜윤)는 '22. 8. 5.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약 4개월 동안 자신이 돌보는 뇌병변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서,

  -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집에 출장 조사하여 추가 성폭력 범죄를 밝혀내고,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토록 하였으며, 현 활동지원사의 보조와 주기적 휴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공판 활동을 수행하여 징역 10년의 중형 선고(검사구형 : 징역 14년)를 이끌어 냄

-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항소하였고, 이후 항소심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노력하겠음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□ 피고인

- A○○(남, 48세, 장애인 활동지원사)

□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은 '21. 2. ~ 5. 4회에 걸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○○(남, 50세)를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,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**[성폭법위반(장애인피보호자간음)]**,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려 폭행**[장애인복지법위반]**

Ⅱ 수사 및 공판 경과

- ’21. 6. 2. 피해자, 춘천경찰서 고소
- ’21. 9. 14. 당청, 피고인 구속 송치 받아 조사 후 구속 기소
- ’21. 9. 15.~11. 22. 당청, 피해자 집에 **직접 출장 조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 수사하여 추가 성폭행 범행 등 여죄 인지**

> ▲ 뇌변병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검찰청 소환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오래전부터 피해자를 활동지원해 오던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신뢰관계 동석자로 배석시키고, 검사 및 수사관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 진술청취 후 추가 범행 인지

- ’21. 11. 23. 당청, 피고인에 대한 여죄 병합 기소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

> ▲ 추가기소 공소사실 : 성폭법위반(장애인유사성행위) 1회, 성폭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 4회, 장애인복지법위반 4회

- ’22. 5. 10. **피해자 법정 증언**

> ▲ 공판검사는 법원 증인지원관, 피해자의 가족,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의하여 **증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편함을 최소화**할 수 있도록 **지원함**
>
> – ① **피고인 퇴정**, ② **피해자의 가족**이 **신뢰관계인으로 동석**하여 피해자 **진술 보조**, ③ **現 활동지원사의 증언 보조**(피해자 뒤에서 **몸을 받쳐주어 앉은 자세를 유지**할 수 있게 하였음), ④ **피해자 요청시 휴정** 등으로 지원함

- ’22. 8. 5. 1심 선고 : 징역 10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등 부수처분
- ’22. 8. 9. 당청,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감사편지 수령

> ▲ 피해자의 가족은 당청 수사 및 공판 검사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파렴치한 가해자에 대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걸어주어 감사하다는 취지의 감사 편지를 당청에 보내옴

- ’22. 8. 11. 당청, 양형부당 항소제기

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-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출장조사, 피해자 법정 증언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, 피고인의 여죄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 추가 수사 및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실형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등 부수처분 선고를 이끌어 냄

- 당청은 앞으로, 이 사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